

消防法施行規則 改定骨子

80. 6. 3 소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점검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소화기구의 설치) 소방대상물별 단위로에 시행령 별표1의 3항(유동음식점, 음식점)에서 규정한 30평² 소방대상물(총전 100m²)
2. 제28조 4항 중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50평²마다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비치(총전 100m² 이하마다 1개)
3. 제29조(대형소화기의 설치) 3항 및 6항의 200Kg(총전 100Kg), 40Kg(총전 20Kg)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각각 14단위, 5단위(총전 8단위) 이상인 분말소화기를 2개씩 비치
4. 제36조(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기준) 5항(신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5. 제41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항 중 할로겐화물의 표준방사량을 1분(총전 2분)으로, 동조 2항의 할로겐화물의 저장량 계산식 변경
6. 제59조(살수헤드의 설치 부분) 제6호(신설)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에는 살수헤드 제외
7. 제60조(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제1호 (다) 살수헤드의 수는 2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제62조(표준방사량) (개정) 3종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은 설계된 각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양
9. 제120조(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제9호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링크전용실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70도 미만의 액체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욕내 링크저장소(총전에는 경유로써 지정수량 이상 이었음.)로 개정, 이로 연하여 경유 5,000L 까지 3종 소화설비가 완화됨.
10. 제130조(위험물 저장의 예외) 유황의 옥외저장은 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유황의 적치소의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방화담벽을 설치하고, 석면 등 불연성이 있는 막으로 피복하여야 한다.